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 보고서

Text **('25上 평가번호:7)**

Special

개인·법인	업종(코드)	조사유형	외형구간	조사청
법인	종합유선방송(9213004)	일반통합조사	3조원대	지방청

Text I 조사성과(결과)

Text 가. 조사대상 개요

Text ○ (업황) 조사법인은 '9X.12월 종합유선방송사업과 홈쇼핑 프로그램의

Text 제작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 '1X.7월 이 조사

Text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으로 사명 변경

Text 나. 적출성과

Text □ 주요 적출 내역

Special

연 번	조사항목	코드	적출요지(결정경정 사유)
	공사중단 지체상금	10204	귀책사유 불분명 비용 손금불산입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11505	요건 미해당 제작비용 세액공제 부인

Text 1) (지체상금)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지체 Text 상금의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21사업연도에 잡손실로 Text 계상한 지체상금 249억 손금불산입

Text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6【영상콘텐츠

Text 제작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이

Text 포함되어 있어 세액공제 부인

Text Ⅱ 조사노하우

Special

적출1

❖ 비용 귀속시기 오류 (항목코드: 10204)

공사중단에 따른 지체상금 미확정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언론보도)
 조사법인 관련기사 검색 중 「☆☆ K 1년째

 Text
 공사 중단 경기도 vs
 공방 가열」이라는 기사를 발견하고

 Text
 경기도와
 (이하 '자회사')가 추진한 K

 Text
 공연장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확인함

_		
Table	◆ 언론보도 내용 (ㅇㅇ일보)	
	경기도에 "완공 기한 연장해 달라" 요청	
	국토부 중재 요청 후 중재안 수용 입장	
	반면 경기도는 "중재안 법적 효력 없어" 검토 중	

Text ○ (착안사항) 조사법인은 ☆☆시 부지에 약 2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Text 규모의 K팝 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되어

Text 경기도와 갈등이 있다는 언론보도에서 공사지연 관련 지체상금이

Text 발생하였을 것으로 착안함

◆ 주요 혐의내용

- ① 지체상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인지 여부
- ② 지체상금 손금 귀속시기 적정 여부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ext O (지체상금)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으로 법인의 귀책사유로 Text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비용으로 실제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됨

Table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Table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K-> 사업

Text 기본협약"체결

Text - "K- 사업"을 진행하며 3차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Text 기한을 연장, 완공기한은 2차 사업계획서 기준('20.12.31)으로 하여

Text 지체상금의 경우 '20.12.31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확정

Text - 조사법인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통보 공문을

Text 수령하고, 공문 및 당초 협약에 명시된 지체상금 부과기준에 따라

Text 계산한 금액 원을 2021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

 Table
 연도
 계정과목명
 차변금액
 적요

 2021
 잡손실
 21.3Q 자회사 지체상금

 2021
 잡손실
 21.4Q 자회사 지체상금

 합계
 합계

Text ○ (손금 증빙자료) 조사법인은 사업용지 공급계약서, 지체상금 부과

Text 안내 공문을 지체상금에 대한 손금 증빙자료로 제출

Table

◆ 제출자료 1 (계약서 일부)

④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급대상용지 지상에 사업계획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본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갑"과 "을"이 미리 합의하여 준공기한을 연기한 경우, 준공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기반시설공사지연 등 "갑"의 의무와 역할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이 불가능하여 준공이

Table

◆ 제출자료 2 (경기도 공문 일부)

제목 : ☆☆관광문화단지 사업용지 지체상금 안내



부지	용지가액	연간비율	지체상금
С	St.	10%	
A	No.	10%	
T		10%	
합계			

- Text (조사법인 의견) 계약상대방의 부과 안내 행위 및 당초 협약상 명시된

 Text 조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조사법인에 있음이 확인되고, 지체상금 의무의
 실현가능성도 성숙·확정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의 귀속시기는 금액 및 지급
 의무가 확정된 2021사업연도가 타당함
- Text O (조사팀 의견) 조사법인의 귀책사유 外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도

 Text 존재하고, 경기도가 최초 지체상금 부과 안내 공문 발송 이후 추가적인
 납부 독촉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으므로 2021사업연도에 손금이 확정

 Text 되었다고 볼 수 없음

Text 나. 증거자료 확보 및 처분 유지

- Text (제출자료 검증) 조사법인이 제출한 자료 검토 결과, ^① 계약서에 기재된

 Text '을'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② 경기도에서 지체상금을 확정하여 공문을

 발송한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2차 자료요구
 - Text (2차 제출자료) 조사법인이 2차로 제출한 경기도 발송 공문 원본에는
 Text 지체상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최초로 소명한 공문의 지체상금 '계산 내역'은 조사법인이 편집하여 제출한 사실 확인
- Text O (과세증빙 확보) 지체상금이 2021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Text 조사팀의 과세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부지제공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조사법인 설득하여 재경팀 담당자 진술 확보

 - (귀책사유) 공사지연 귀책사유가 ^① 공사 부지 내 매립된 건설·산업 폐기물 발견 ^②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불가 통보 등 조사법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도 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로 확인
 - Text (손금 미확정) 재경팀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하여 당초 협약 해제에 Text 따른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행보증금 반환, 지체상금 부담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소 제기 진행중이라는 진술 확보하여 손금 미확정 사실 확인

Text O (조사결과) 조사법인은 지체상금이 확정되어 당초 신고내용이 타당

Text 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 및 재소명 요구, 담당자와
수차례 인터뷰 실시 등 과세유지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한 결과

Text - (확인서) 조사법인으로부터 ^①공사지연 귀책사유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과

Text 다툼이 있어 지체상금 감면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②조사법인에게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지급의무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소송을 통해 다툴 예정이라는 손금 미확정 확인서 징취

Special

적출2

❖ 기타세액공제 오류 (항목코드: 11505)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부인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영상 세액공제)조사법인은 드라마, 예능 등 프로그램을 자체제작

Text <mark>하는 방송사로 업무상 쉽게 접하기 힘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mark>

Text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

Text - 해당 공제는 정부가 영상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의

Text 부담을 줄이고. 추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게 하려는

Text 취지로 '16.12.20. 신설된 조항임

Table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시행2017.01.01.][제14390호,'16.12.20.] ○주요내용

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6 신설) 영상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비용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Text ○ (언론보도) 조사 당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관련 범위를 확대하는

Text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언론 보도 내역 다수확인

○ K콘텐츠 발전하려면 세액공제 확대해야... 법개정안 발의

Table 참고 관련 언론보도(매일경제 '24.09.20.)

이번 개정안은 영화, OTT 등 영상 콘텐츠로 한정해 적용되던 세액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조세특례법 제25조의 6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관한세액공제 조항으로 수정,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도 10%포인트씩 올려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 기업 25%로 상향했다.

이는 세액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보다 부가가치 창출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0년 '콘텐츠 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연구'를 통해 2025년 추정치 기준 1681억8000만원의 세수 감소와 함께 1744억원의 세수 증가가 생겨 최종적으로 63억2000만원의 세액공제 편익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Text

○ **(신고내역)** 조사대상기간인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영상

Text 콘텐츠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총 원의 법인세를 공제받음

Text <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신고내역 >

(백만원)

Table	구분	'20년	'21년	'22년	합계
	공제금액				

Text - 기존 해석사례나 파례가 많지 않아 조사법인이 법을 해석하는 과정

Text 에서 과다하게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Text 세액공제 탈루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실시함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ext ○ '17년 신설된 조특법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Text 공제】, 관련 시행령 및 예규 등을 심층 검토

Table 관계법령 조특법 제25조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를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Table 관계법령 조특법 시행령 제22조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③ 법 제25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 2.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관계법령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영 제22조의10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1. 영 제22조의10 제2항 제1호에 따른 드라마 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 2. 영 제22조의10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화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공제내역분석)조사법인이 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영상콘텐츠는

Text 215건으로, 공제대상 제작비용 총 💻 원으로 확인

Text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내역 >

(개, 백만원)

Table

е	구분	영상콘텐츠 수	제작비용	세액공제
	'20년	126		
	'21년	46		
	'22년	43		
	합계	215		

참고	세액공기	데 신청	대상 리스트 중 발춰	l		
채널 🔻	프로그램 명	· 성·	편성기간 ▼	제작 구분 🔻	제작비 총액(A) *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 *
	5,010,500	예능	방송중(6/11~)	자체(부분외주)	1,495,484,855	
		예능	방송중(7/12~)	자체	1,457,641,814	10
		예능	방송중('18 4/7~)	자체	5,469,165,900	
		예능	방송중(6/29~)	자체(부분외주)	2,322,146,896	
		예능	방송중(3/11~)	자체	4,701,767,905	1
35		예능	항송동(17 11/25~ 20 5/16)	자체(부분외주)	1,301,675,183	390,956,663
		예능	방송종료(18 6/6~120 5/12, 20년 19회)	자제(부분외주)	1,472,568,609	
10		예능	방송종료(3/1~6/14, 13회-감독판 포함)	자체	2,593,596,671	
		예능	방송중(5/2~)	자체	3,639,331,442	
		예능	방송중(11 9/17~)	자체	6,082,495,183	de .
		예능	방송중(5/11~7/27, 12회)	자체(부분외주)	940,299,396	
		예능	방송종료(1/5~2/16, 6회)	자체	672,295,974	
- 91		예능	방송중(5/19~7/21, 10회)	자체	1,286,083,447	1
4		예능	방송종료(1/2~1/23, 4회)	자체	482,127,486	
		예능	방송종료(1/14~3/3, 8회)	자체(부분외주)	953,287,818	
		예능	방송종료(2/22~4/18, 9회)	자체	1,661,830,716	
		예능	방송종료(1/4~2/15, 7회)	자체	1,284,418,323	
		예능	방송종료(4/19~4/26, 2회)	자체	1,340,398,370	
		예능	방송종료(2/10~3/23, 7회)	자체(부분외주)	603,868,401	
		예능	방송종료(19년 11/21~20년 2/13, 13회)	자체	508,917,425	
- 3		CHIL	ULA TABLE 6 (6.)	T1+1		+

Text ○ (공제대상확인)조특법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Text 세액공제】상 공제대상 프로그램, 적용요건, 제외항목 등에 대하여

Text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요건 검토

Table

참고	조특법 제25조의6 상 공제대상 검토
----	----------------------

- 구분	공제대상 내역	적정 여부		
공제대상 프로그램	- 「방송법」에 따른 오락, 교양, 애니메이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른 영화, 비디오물			
적용요건	아래의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할 것 - 작가와의 계약체결을 담당 - 주요 출연자와 계약체결을 담당 -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 계약체결 담당 - 제작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	여		
제외비용	- 국가·공공기관 지원금으로 제작한 콘텐츠 - 광고 또는 홍보 등 목적의 영상제작비 -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콘텐츠를 활용한 2차 제작물	O‡		

	() () () () ()	check list	(N)	2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check list 충족시 작성
. 작가계 🕶	. 출연진 🕶	3. 의사결? 🔻	4. 스텝계 🕶	지이상 충 🔻	궤약서 ▼	계약서 파일명 _작가계약서
0	0	0	0	충족	0	/_ ~ / / 시 수시 출연자 계약서 - 촬영 계약서 _ 연출 계약서
0	0	0	0	충족	0	작가 계약서 들면자 계약서 촬영 계약서 편집 계약서
0	0	0	0	충족	0	일 작가 계약서 _출연자 계약서 일 연출 계약서 일 촬영 계약서
0	0	o	×	충족	0	_작가 계약서 2. 주(출연자) 계약서 _연출 계약서 _편집 계약서
0	0	0	0	충족	0	,력_작가계약서 력_출연자계약서 ,력_연출계약서 ,력_촬영계약서
0	0	0	0	충족	0	작가 계약서 출연자 계약서 연출 계약서 # 출영 계약서

Text - 특히 계약서 등 확인하여 적용요건(4개 조건 중 3개 이상 충족 여부) 중점
Text 검토하였으나 영상콘텐츠 215개 모두 공제대상 프로그램으로 확인

Text ○ (세부항목검토) 공제 대상 제작비용 세부항목 검토한 바 일부 프로

Text 그램에 고액의 장소이용료가 확인되어 관련 계약서 등 지출증빙

Text 추가 검토한 배

Text - 아래와 같이 골프장 등 야외 장소대여 관련하여 이용료가 제작비용에 Text 포함된 사실을 확인



Table 참고 고액 장소사용료 관련 프로그램화면 발췌②

-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부 적용범위

Text 확인한 바 장소관련 비용은 '바.세트비'항목으로 세트제작비,

Text 스튜디오 임대료가 적용되는 사실을 확인

- 즉, 상기의 야외장소 이용료는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Text 확인하고 해당 비용 공제 대상 제작비용에서 제외하고 부당공제

Text 적출

Table 참고 조특법 제25조의6 상 공제대상 검토

구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2.촬영 제작	바.세트비	1)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대료		
	사.소품비	1)소품담당자 인건비 2)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소품의 구입비용, 대여소품의 대여비용		
	아.의상비	1)의상담당자 인건비2)제작의상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의상의 구입비용, 대여의상의 대여비용		
	자.분장 및 미용비	1)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2)특수분장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입 및 대여비용		
	차.특수효과비	1)특수효과담당자 인건비 2)강풍기, 강우기, 강설기 등 기후효과 관련 장비 사용료 및 총기 등 특수효과 대여장비 사용료 3)컴퓨터그래픽 작업료		
	카.동시녹음비	1)동시녹음기사 인건비		

Text 나. 증거자료 확보 및 처분 유지

Text ○ 공제대상항목에 대해 면밀히 분석 후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Text 확보, 법령에 따른 타당한 과세논리 제시를 통해 조사법인은 과세

Text 타당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

Text - 조사종결 후 불복없이 전액 납기 내 납부